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차례

200	디자인 기본원칙	4	500	광고면 그래픽 가이드라인	22
210	공통 5대 원칙	4	510	5대 원칙	22
220	체크리스트	4	520	체크리스트	22
230	지주이용간판 체크리스트	5	530	표현 요소	24
240	홍보탑 체크리스트	5			
250	설치규격	6	600	조명 가이드라인	28
			610	5대 원칙	28
300	경관 가이드라인	10	620	체크리스트	28
310	5대 원칙	10	660	조명의 가이드라인	29
320	체크리스트	10	670	기타 조명 관련 권장사항	33
340	광고물 유형별 설치기준	13			
			700	관리 가이드라인	34
400	광고물 외형 디자인 가이드라인	16	710	5대 원칙	34
410	5대 원칙	16	720	체크리스트	34
420	체크리스트	16	730	광고 제한 품목 및 광고주의 지정	35
430	요소별 디자인 원칙	18	740	광고 표시 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35
440	지주이용간판 형태의 기본방향	19			
450	홍보탑 형태의 기본방향	19	800	권장디자인 및 시뮬레이션	36

210

공통 5대 원칙

- 1 평면형보다는 복합형, 입체형 디자인을 권장한다.
- 2 간결하고도 창조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 3 대상지의 주변 경관과 조화되어야 한다.
- 4 시인성과 가독성을 위해 여백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
- 5 자극적인 조명보다는 편안한 조명을 권장한다.

220

체크리스트**221 스카이라인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광고물이 지나치게 멀리서부터 보이지는 않는가
- 구릉지와 하늘이 맞닿는 선 위로 광고면의 반 이상이 올라가지 않았는가
- 도로보다 높은 구릉지 위에 불필요하게 설치하지 않았는가
- 되도록 작고 낮게 설치하였는가
- 도로와의 이격거리, 광고물간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였는가

222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 자연경관을 즐길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 강 주변, 평지 등의 트인 시야를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 공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해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가
- 문화재 등 경관이 보호되어야 하는 곳에 설치하지는 않았는가
-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는 장소는 아닌가

223 교통안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운전자의 시선을 자극하고 있지는 않는가
- 운전자의 시선을 오래도록 잡아두고 있지는 않은가
- 교통시설과 혼동되는 색상이나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 교통시설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지는 않았는가
- 야간조명 시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거나 자극하지 않는가

224 주변 경관과 조화되어야 한다.

- 획일적인 형태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평면형으로만 디자인하지는 않았는가
- 지지구조에 과도한 장식이 되어있지는 않은가
- 지지구조는 환경에 조화되는 색상과 재료를 적용하였는가
- 지지구조에 환경 유해물질을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225 이미지를 중심으로 표현해야 한다.

- 문자 중심으로 기업이나 제품을 표현하지 않았는가
- 제품명이나 기업명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았는가
- 일러스트레이션, 사진을 사용한 감성적 표현보다 문자를 남발하지는 않았는가
- 직접적인 표현을 지나치게 많이 쓰지는 않았는가
- 느낄 수 있는 이미지보다 읽어야 하는 정보로만 표현하지 않았는가

230 지주이용간판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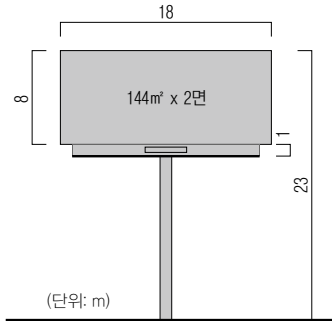
- 정해진 규격보다 크거나 높게 설치하지 않았는가
- 주변경관을 거스르면서 불필요하게 높게 설치하지 않았는가
- 지주의 철골과 지지구조가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 지주의 색상이 주변경관에 거슬리지 않는가
- 대상지 유형에 따른 적정 휘도의 간접조명 방식을 사용하였는가

240 홍보탑 체크리스트

- 대상지에 맞는 홍보탑의 유형을 무시하지 않았는가
- 획일적인 지주이용간판 형태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 대상지 환경에 어울리는 세로형으로 디자인하였는가
- 넓은 설치조건에는 일정 영역의 애드존을 지정하였는가
- 입체적인 조명 효과가 있는 간접조명 방식을 사용하였는가

251 지주이용간판 권장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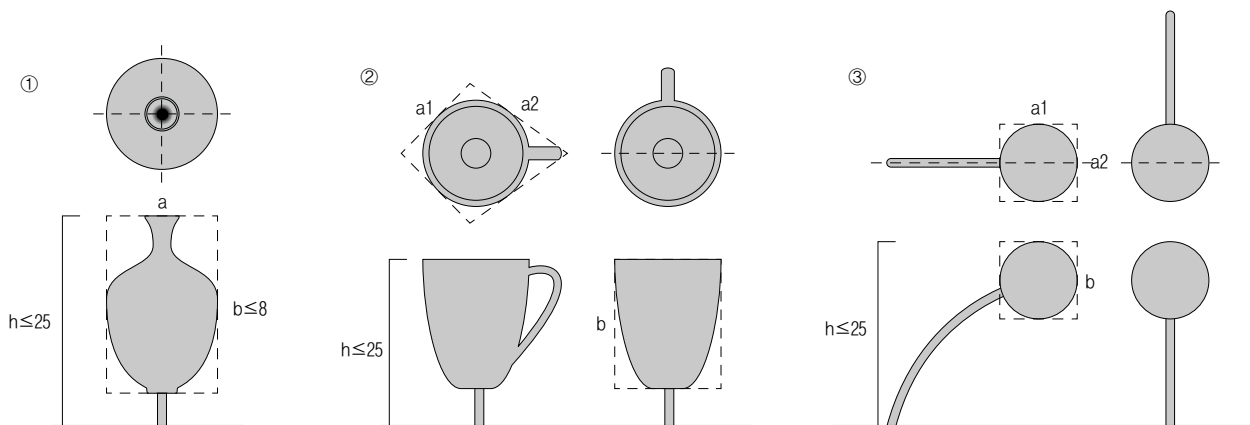
251.1 평면형 지주이용간판



- 크기: 가로 18m×세로 8m=144㎡ 이내
- 총 광고면적: 288㎡ (144㎡×2면) 이내
- 높이: 도로면 수평 높이 기준 최대 23m를 권장 (단, 대상지 상황에 따라 최대 25m)
- 조명: 간접조명
- 지지구조: 철골구조 노출 불가
- 이격거리: 광고물 간 500m 이상, 도로 갓길에서부터 30m 이상
- 나들목과 분기점, 올림픽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서울~안성 구간)의 도로와의 이격거리: 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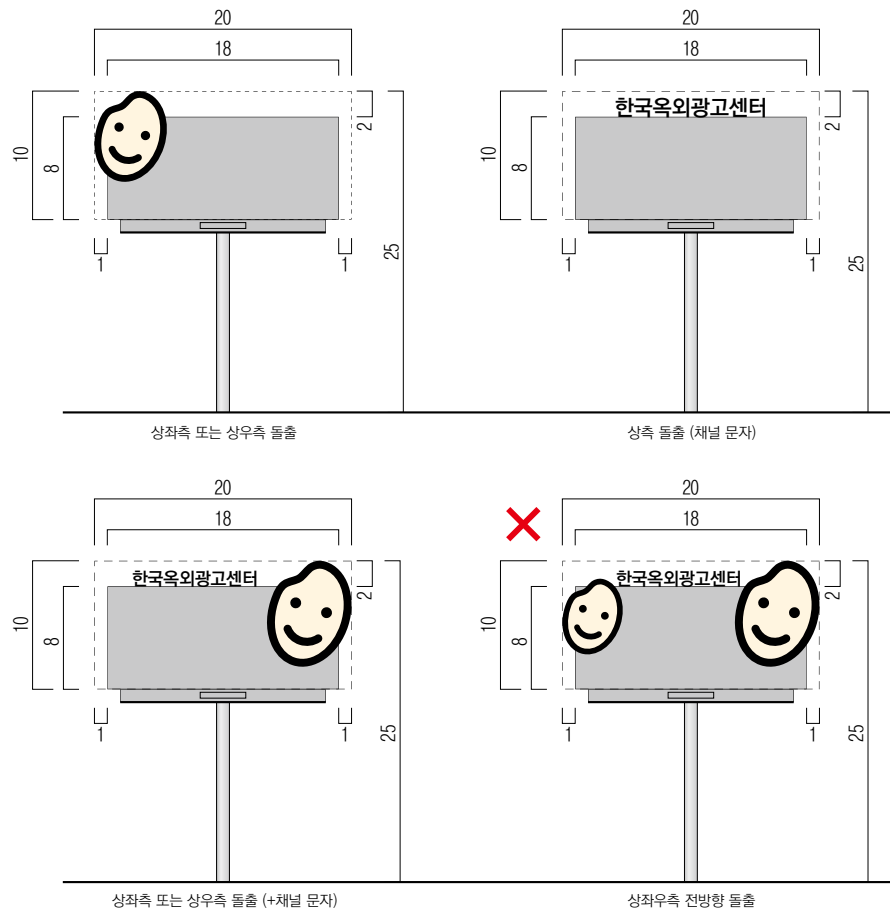
251.2 입체형 지주이용간판

- 총 광고면적: 288㎡ 이내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
- ① $a \times b \times 70\% \times 4\text{면} = 288\text{㎡}$ 이내
- ② $(a1 \times b \times 2\text{면} + a2 \times b \times 2\text{면}) \times 70\% = 288\text{㎡}$ 이내
- ③ 광고물의 단면적 $\times 70\% \times 4\text{면} = 288\text{㎡}$ 이내
- 높이: 도로면 수평 높이 기준 최대 25m 이내
- 조명: 간접조명
- 지지구조: 철골구조 노출 불가
- 이격거리: 광고물 간 500m 이상, 도로 갓길에서부터 30m
- 나들목과 분기점, 올림픽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서울~안성 구간)의 도로와의 이격거리: 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251.2 복합형 지주이용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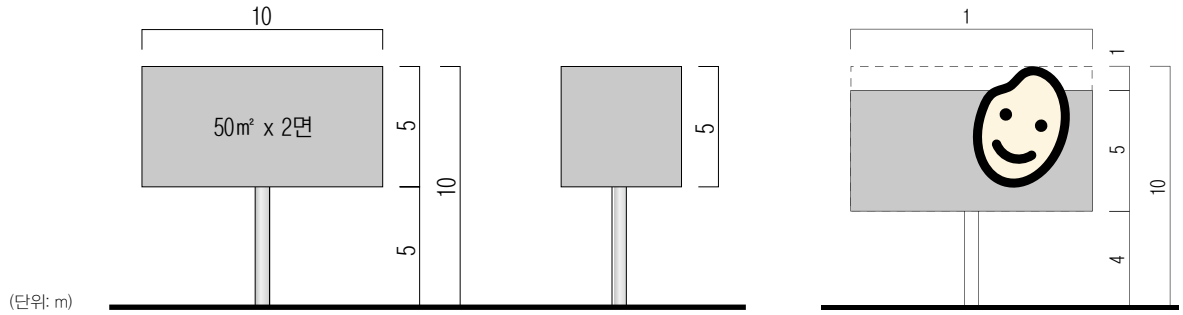
- 크기: 가로 20m×세로 10m×70%=140㎡ 이내
- 총 광고면적: 280㎡ (140㎡×2면) 이내
- 높이: 도로면 수평 높이 기준 최대 25m 이내
- 돌출 기준
 - ① 광고면을 기준으로 상단, 좌측, 우측, 전면으로 돌출할 수 있다.
 - ② 한 광고물에서 두 방향의 돌출은 가능하나, 세 방향의 돌출은 금지한다.
 - ③ 상단돌출은 최대 2m, 측면돌출은 최대 1m, 전면돌출은 최대 2m를 초과할 수 없다.
- 조명: 간접조명
- 지지구조: 철골구조 노출 불가
- 이격거리: 광고물 간 500m 이상, 도로 갓길에서부터 30m
- 나들목과 분기점, 올림픽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서울~안성 구간)의 도로와의 이격거리: 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252 홍보탑 권장규격

252.1 평면형 홍보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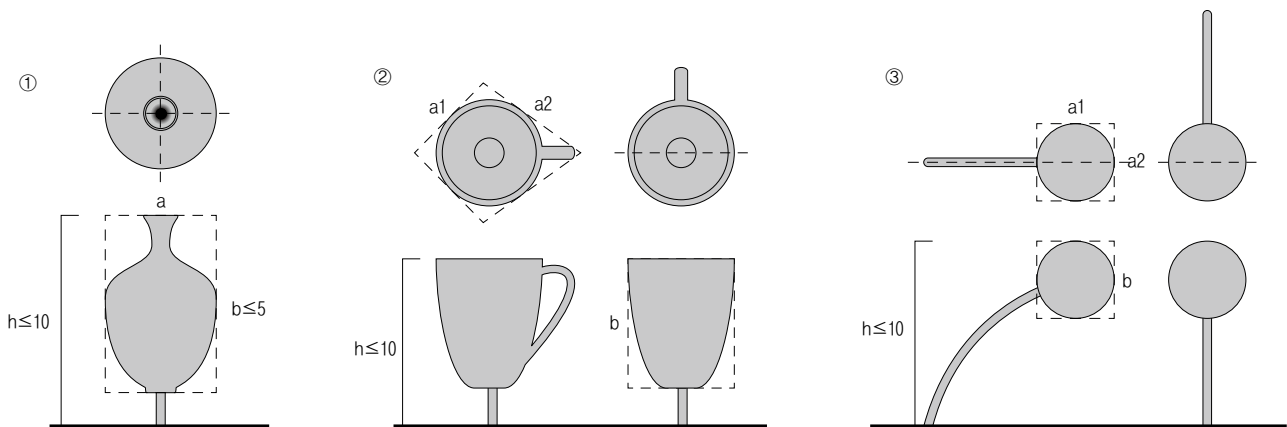
- 크기: 가로 10m×세로 5m=50m² 이내
- 총 광고면적: 100m² (50m²×2면) 이내
- 높이: 10m 이내



- 조명: 간접조명
- 설치장소: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진출입로 제외)
- 설치방법: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이격거리: 광고물 간 50m 이상 권장

252.2 복합형 홍보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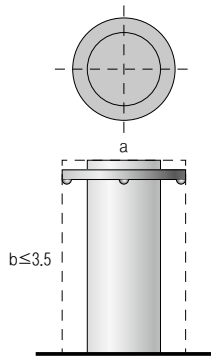
- 크기: 가로 10m×세로 5m=50m² 이내
- 총 광고면적: 100m² (50m²×2면) 이내
- 높이: 10m 이내
- 돌출방법: 전면돌출 1.5m 이내(측면돌출 지양)
- 조명: 간접조명
- 설치방법: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이격거리: 광고물 간 50m 이상 권장



252.3 입체형 홍보탑 일반형

- 총 광고면적: 100㎡ 이내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
 - ① $a \times b \times 70\% \times 4\text{면} = 100\text{㎡}$ 이내
 - ② $(a_1 \times b \times 2\text{면} + a_2 \times b \times 2\text{면}) \times 70\% = 100\text{㎡}$ 이내
 - ③ 광고물의 단면적 $\times 70\% \times 4\text{면} = 100\text{㎡}$ 이내
- 높이: 10m 이내
- 조명: 간접조명
- 설치장소: 공항, 철도역사, 버스 및 항만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진출입로 제외)
- 설치방법: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이격거리: 광고물 간 50m 이상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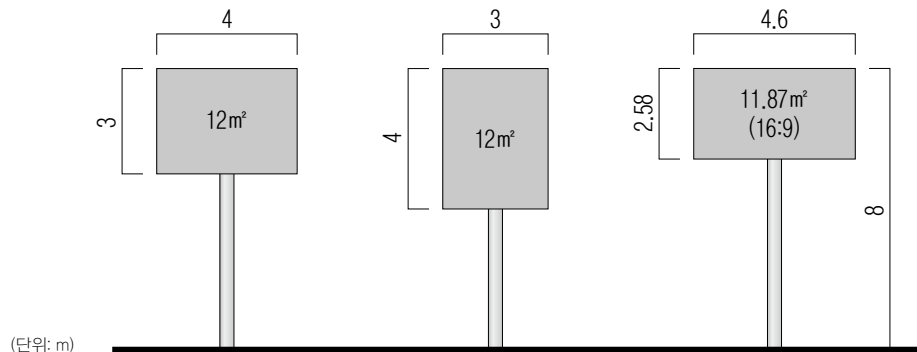
252.4 입체형 홍보탑 보행자형



- 총 광고면적: 100㎡ 이내
 -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
 - $a \times b \times 70\% \times 4\text{면} = 100\text{㎡}$ 이내
- 높이: 3.5m 이내
- 조명: 간접조명
- 설치장소: 철도역사, 버스 및 항만 터미널
- 설치방법: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이격거리: 보행자의 보행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 확보 권장

252.5 전광류 홍보탑

- 총 광고면적: 12㎡ 이내
 - 3:4 비율의 가로형, 세로형
 - 16:9 비율의 가로형, 세로형
- 높이: 8m 이내
- 조명: 직접조명
- 설치장소: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내



310

5대 원칙

- 1 자연경관의 조망을 유지한다.
- 2 기존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3 경관의 악센트가 되어야 한다.
- 4 경관의 리듬감을 살린다.
- 5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320

체크리스트

321

경부고속도로

321.1 자연경관 및 농촌경관 유형인 경우

- 전방조망이 산림녹지인 경우, 근경, 중경, 원경으로서의 자연풍경 조망을 저해하지 않는가
- 인공시설물의 형태와 색이 자연풍경과 부조화를 이루지 않는가
- 전방조망이 오픈 외부공간인 경우, 시각적 쾌적함을 저해하지는 않는가
- 아래로 향하는 시각적 개방감을 방해하지 않는가
- 야간경관이 주변과 비교해 지나치게 밝지 않은가

321.2 도농복합경관 유형인 경우

- 아래로 향하는 도로의 경우, 아래쪽으로서의 시각적 개방감을 방해하지는 않는가
- 경관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건물의 경우, 그 모서리의 시각적 처리에 신경썼는가
- 전방조망이 산지 및 열린 공간인 경우, 시각적 개방감의 연속성을 방해하지 않는가
- 산지 뒤의 높은 건물이나 시설물이 자연경관 저해요소로 작용할 때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로 디자인하였는가

- 근경, 중경, 원경으로서의 주요한 풍경 조망을 저해하지 않는가
- 경관 저해요소를 적절히 가리거나 좀 더 좋은 경관으로의 시선유도가 가능한가

321.3 도시경관 유형인 경우

- 원경으로서의 구릉지 경관을 가로막고 녹시율을 낮추고 있지는 않은가
- 측면 시야가 막힌 경우 전방조망을 가로막거나 녹시율을 낮추고 있지는 있는가
- 육교, 고가, 방음벽 등 경관 저해요소와 더불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지 않은가
- 육교, 고가, 방음벽 등 경관 저해요소로부터 좋은 경관으로 시선을 유도시키는가

322 올림픽대로

322.1 자연경관 및 공원경관 유형인 경우

- 주변 자연풍경 조망을 방해하지 않는가
- 아래로 향하는 시각적 개방감을 방해하지 않는가
- 야간경관이 주변과 비교해 지나치게 밝지 않은가

322.2 도시경관 및 하천경관 유형인 경우

- 구릉지 경관을 가로막고 녹시율을 낮추고 있지는 않는가
- 도로에서의 운전자 조망과 인근에서 하천을 배경으로 한 조망을 가로막지 않는가
- 도시경관 저해 시설물과 시선이 겹칠 경우, 이와 더불어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가
- 전방에 교통안내 시설물이 존재할 경우, 교통안전에 방해를 주지는 않는가

323 인천공항고속도로

323.1 도로경관 및 경작경관 유형인 경우

- 전방조망이 열린 공간인 경우 시각적 개방감의 연속성을 방해하지 않는가
- 분리벽, 가로등, 전신주 등 경관 저해요소와 더불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지 않은가
- 전방조망이 인공시설물일 경우, 중요한 시각 요소로 작용해 시선을 유도하는가
- 인공시설물의 형태와 색이 경관의 주조색과 부조화를 이루지 않는가

323.2 도로경관 및 도시경관 유형인 경우

- 구릉지 경관을 가로막고 녹시율을 낮추고 있지는 않는가
- 개발예정지의 경우, 추후 개발되었을 때의 상황변화를 무시하지 않았는가
- 일정한 경관이 유지되는 경우, 경관의 연속성과 리듬감을 무시하지 않았는가
- 가로등, 분리벽 등 인공시설물이 일정하게 유지될 경우, 이것을 이용해 설치하였는가

324 김포공항/ 인천공항

- 전방이 열린 공간인 경우 시각적 개방감의 연속성을 방해하지 않는가
- 구릉지 경관을 가로막고 녹시율을 낮추고 있지는 않는가

- 공항 진·출입로 주변 녹지 이용이 경관의 연속성과 리듬감을 깨뜨리지는 않는가
- 추후 대형건물 등 인공시설이 계획될 경우, 경관변화를 고려하였는가
- 주차장의 차량경관을 고려하였는가
- 인공시설물의 형태와 색이 경관의 주조색과 부조화를 이루지 않는가
- 추후 개발에 따른 경관변화를 고려하였는가
- 낮은 수목이 있는 경관의 특성을 간과하지 않았는가

325 서울역

- 인공시설물의 형태와 색이 주변의 경관과 부조화를 이루지 않는가
- 시계탑, 정류장, 가로등 따위 인공시설물의 경관 저해요소를 방지하지 않았는가
- 보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일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지는 않는가
- 주변의 대형 광고시설물과 고가 등으로부터 시각적 침해를 받지 않는가
- 야간경관이 시각공해를 유발하지는 않는가

326 고속도로 휴게소

- 근경으로서의 구릉지 경관을 가로막고 녹시율을 낮추고 있지는 않은가
- 휴게소 진입로 입구에 있는 휴게소 지주표지판이 시각적 방해물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 휴게소 외부경관으로서 광고물이 주요 시각요소로 작용하고 있는가
- 휴게소 내부경관으로서 광고물을 인지할 수 있는가

330

5대 원칙과 경관 관계



341 지주이용간판

341.1 공통사항

- 도로의 상·하행 양방향에 노출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양방향 모두의 경관을 고려
- 전신주, 고압선 등으로 배경이 어지러운 곳에는 되도록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하지 않음
- 인근 지역에서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를 고려
- 지주이용간판이 주변의 교통표지판을 가리지 않도록 함
- 지주이용간판이 교통표지판 배경이 되어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설치
-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광고효과를 위해 톨게이트나 도시경관 가까이 설치

341.2 도로 양 측면의 높이가 다른 경우

- 낮은 쪽 대지에 설치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고 높은 대지에 설치
- 높은 대지에 설치되는 광고물이 후면 구릉지의 스카이라인을 넘지 않도록 함
- 도로보다 낮은 대지에 설치되는 경우 도로로부터 대지 조망이 방해받지 않도록 설치
- 강에 면한 쪽으로는 가급적 지주이용간판 설치하지 않음

341.3 도로와 주변 대지가 평지에 위치한 경우

- 도로와 주변 대지가 평지일 경우, 주변 시설물과의 리듬의 강약을 고려해 설치
- 위의 경우 광고물이 주변경관과 대비되는 악센트 역할을 하도록 설치
- 경관 주조색이 도시경관색일 경우 광고물이 되도록 녹지대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
- 지주하부가 노출되는 간판의 지주는 식수로 차폐
- 지주이용간판을 여러 개 설치하고자 할 경우, 애드존 효과를 위해 가까이 설치

341.4 도로경계선에 방음벽, 철도 분리벽, 가로수가 있는 경우

- 지주이용간판이 가로수에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며 가로수와의 리듬감을 고려해 설치
- 방음벽이나 분리벽, 고가 등 인공시설물로 지주이용간판의 지주를 차폐함
- 철도 분리벽이 있는 경우 고압전기 줄, 폴 등으로 혼란스러운 경관을 형성하므로 지주이용간판 설치는 되도록 피함

342 홍보탑

342.1 공항

- 급격한 향후 경관변화를 고려해 배치를 결정
- 하부가 노출되는 홍보탑은 식수로 차폐하거나 통합적으로 디자인
- 평탄하고 밀도가 높지 않은 곳에는 주변 시설물과의 스카이라인 조화를 고려해 배치

- 리듬감을 위해 배치간격을 조절하거나, 주변과 대비되어 초점이 되는 위치에 설치
- 곡선형 도로와 인접한 녹지대나 주차장의 조경대 등에 설치해 광고효과를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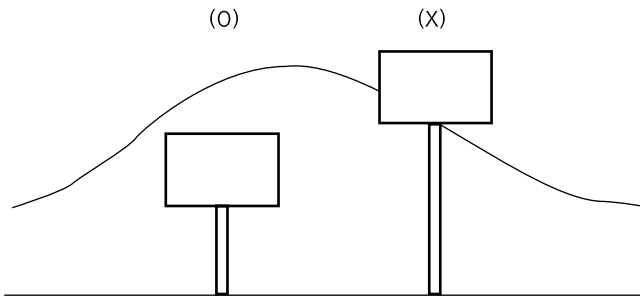
342.2 서울역

- 보행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설치
- 차도와 보행로, 차도와 광장 부분의 경계가 없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곳에서는 홍보탑을 경계로 사용하는 디자인을 권장
- 어지러운 경관에 설치하는 홍보탑은 경관 개선요소가 될 수 있도록 배치
- 야간경관의 주변 휘도 밀도를 고려해 배치
- 보행자의 관점에서 눈에 띄는 스케일의 보행자형 홍보탑을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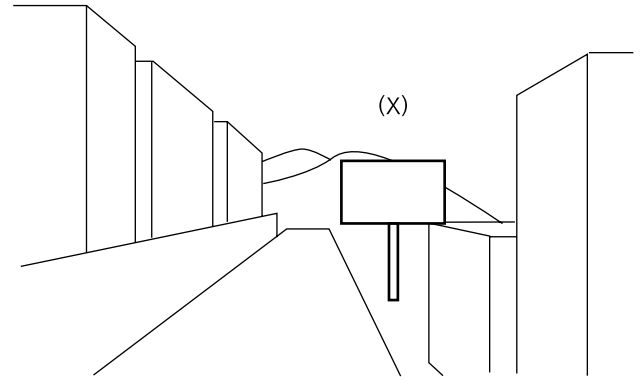
343 고속도로 휴게소

- 주변경관과 조화되고, 녹시율을 낮추지 않는 방향으로 배치·설치
- 휴게소 외부 도로에서의 조망을 우선하여 외부 도로 및 내부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배치
- 고속도로 휴게소 알림판을 가리거나 배경이 되도록 설치
- 고속도로 홍보탑 하부는 식수로 차폐하거나 통합 디자인함
- 차량 진행방향에서 쉽게 조망할 수 있는 각도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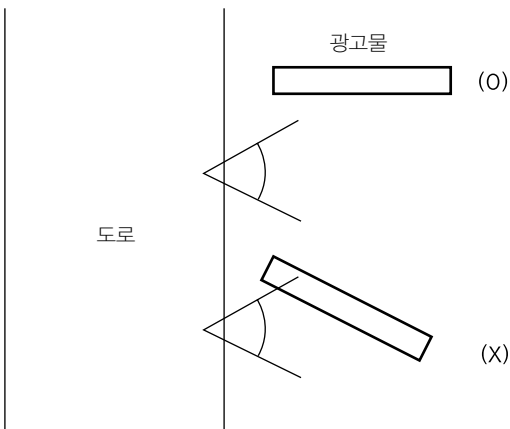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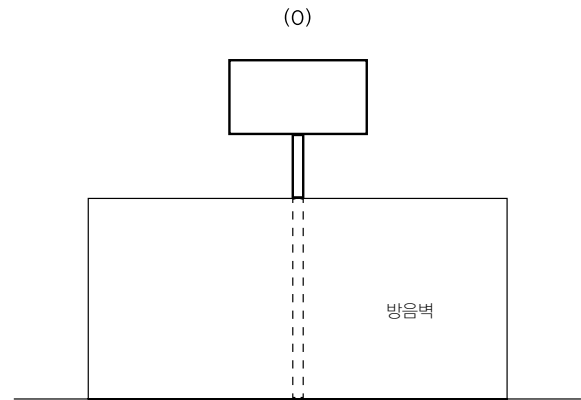
광고물이 배경 산지의 능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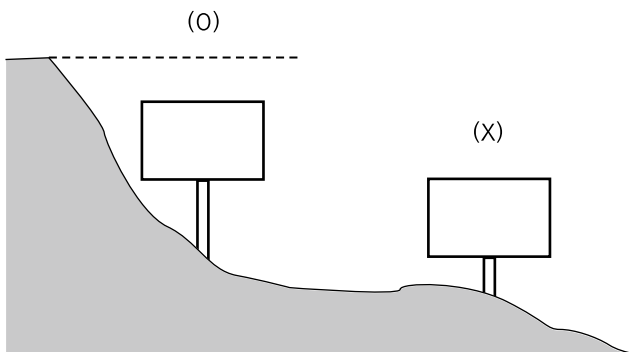
주요 자연조망 축을 가리도록 광고물이 설치된 지양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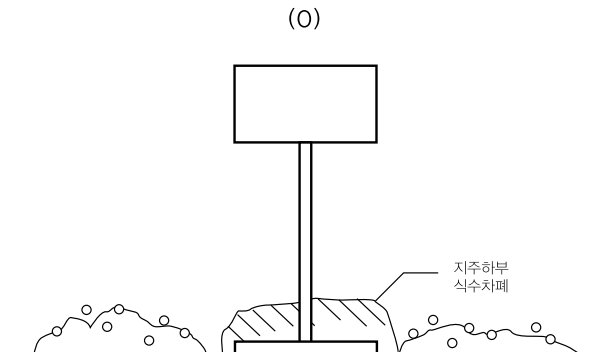
도로 측면에 주요 자연조망이 있을 때
경관을 가리지 않는 각도로 설치하는 경우



방음벽을 지주이용간판의 지주 가림재로 이용한 경우



도로 양 측면의 대지 고저차가 있을 때
대지가 높은 쪽에 설치하는 경우



주변 수목이 낮은 조경구역에 설치된 광고물의 지주하부 차폐 예

410

5대 원칙

- 1 지주이용간판은 1점 지주형을 권장한다.
- 2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단순한 외형이 좋다.
- 3 모서리는 부드럽게 디자인한다.
- 4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질과 형태를 권장한다.
- 5 어둡고 진한 단일색이 좋다.

420

체크리스트

421

색채

- 자극적인 색상을 과도하게 사용해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가
- 주변 건물·시설물의 색상과 충돌하지 않는가
- 색이 자극적이거나 원 재질 표면이 드러나지는 않았는가(예: 광택 스테인리스)
- 너무 많은 색을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422

형태

- 과격하거나 권위적인 디자인은 아닌가
- 과장된 형태나 딱딱한 분위기는 아닌가
- 부담스러운 형태는 아닌가
- 세련되지 못한 조형은 아닌가
- 시각공해로 느껴질 디자인은 아닌가
- 생산성만 고려한 형태는 아닌가

423 재질

- 주변환경 및 건축과 부조화를 이루지는 않는가
- 환경에 유해한 소재가 사용되지 않았는가
- 기후 및 계절 변화에 약한 재질은 아닌가
-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재질은 아닌가

424 조명

- 전체 형상과 조명의 위치가 부자연스럽지는 않은가
- 조명 위치는 광고면과 충돌하지는 않는가
- 조명팔의 형태에 문제는 없는가
- 조명팔의 구조에 문제는 없는가

425 규격

- 옥외간판의 규격이 간판 유형별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았는가
- 옥외간판 및 홍보탑이 주변경관을 가리지는 않는가
- 불필요하게 권위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가
- 주변 사인이나 신호등과는 문제가 없는가

426 위치

- 주변 시설물을 침범하거나 약속된 위치를 벗어나 설치되지는 않았는가
- 공용 공간을 독점해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
- 지형에 맞지 않거나 정보전달이 어렵게 디자인되지는 않았는가
-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정보전달이 어려운 조형으로 되어있지 않은가

427 제작 및 시공

- 형태, 재질 등이 주변환경과 부조화를 이루지는 않는가
- 용접부, 조립부, 개폐부의 마감, 도장상태가 불량하지는 않은가
- 옥외간판을 설치하는 건물 벽면에 파손부위는 없는가
- 전기배선, 안정기의 마감이 불량하지는 않은가

428 안전

- 건축물 고정부와 고정장치의 마감이 불량하지는 않은가
- 전기시설 부분에 빗물이 고여 누전의 위험이 있지 않은가
-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부착물이나 표기물은 없는가
- 철거·설치 시 안전을 고려한 시설과 인력을 고려하였는가
- 옥외간판의 경우 보수를 위한 보행로 및 사다리를 설치되었는가

429 관리

- 미점 등의 조명이나 수명이 다한 조명은 없는가
- 옥외간판에 녹이 슬거나 녹이 흘러내리는 부위는 없는가
- 옥외간판에 파손되거나 더러운 부분은 없는가
- 점검 · 보수 · 청소가 어려운 디자인은 아닌가
- 보수를 위한 통로나 사다리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었는가
- 보수를 위한 통로나 사다리에 안전장치를 빠뜨리지는 않았는가

430 요소별 디자인 원칙

431 색채

- 옥외간판에 적용되는 색은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으므로 단일 색상을 권장
- 주변색과 조화를 이루는 저채도의 색상을 사용
- 도시환경 색상과 어울리게 사용
- 지역의 문화, 공간, 기능 등 특성에 어울리는 색채를 활용
- 재료의 특성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색상을 사용하고, 광택소재 등은 사용을 금지함



432 재질

-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재질을 사용
- 건축물의 외부마감재 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 재질을 사용
-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재질을 사용
- 광고의 특성을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질을 사용

433 상징조형

- 개성있는 심볼이나 독특한 그래픽 이미지만으로 차별화된 옥외광고물
- 광고 주제를 상징하는 간결한 조형 이미지를 개발

434 구조

- 재미있고 다양한 형태의 입체구조로 광고물의 개성과 품격을 살리는 디자인을 권장
- 입체형, 복합형에 적절히 적용되어 광고의 효과를 높이는 방향을 권장

435 조명

- 조명기구 및 조명 설치를 위한 보조기구 등은 형태와 어울리게 디자인
- 조명기구가 보이지 않도록 차폐
- 조명기구 설치 시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이 필요

440

지주이용간판 형태의 기본방향



- 상부, 지주, 하부와 조명 등을 일관성 있게 디자인하여 시각적 안정성을 고려
- 지면 점유공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1점 지주를 원칙으로 함
- 지주의 철골구조가 노출되지 않게 디자인
- 전체적으로 모서리 처리에 유의해 디자인 완성도를 고려
- 내부구조나 배면구조가 보이지 않는 디자인
- 광고면의 하단에 관리공간과 보수공간을 만듦
- 하단의 지주 지지부는 노출되지 않게 마감
- 조명팔의 길이와 수는 최소화하여 디자인
- 조명의 위치 등을 안정감 있게 디자인

450

홍보탑 형태의 기본방향



- 심미성과 안정성 있는 디자인을 기본방향으로 함
- 도시의 아름다움을 선도하는 디자인을 기본방향으로 함
- 모서리를 곡면처리해 부드러운 이미지로 디자인
- 홍보탑 외형 전체를 일관성 있게 디자인
- 외곽형태는 작게, 광고면은 크게 보이도록 디자인
- 상부, 지주, 하부를 자연스러운 일체형으로 디자인
- 광고면의 하단에 관리공간을 고려하여 디자인
- 지주와 지면 고정부에 볼트, 너트, 콘크리트 지지물 등은 차폐시킴
- 일체감 있는 형태로 전체와 어울리도록 디자인
-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설치



광고면보다 철골트러스에 시선이 집중된다.



내부가 보일 수 있는 지주부분을 감싸 정리되어 보인다. 상부 광고면이 나름대로 정리되었다. 특히 모서리는 곡면처리해 부드러운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상부 광고면이 모서리가 살아있다. 경제성만 추구한 상부형태이다.



파이프 구조로 일부러 커버를 씌울 필요 없는 형태이다.



상단의 조명기구가 복잡해 보이며 광원이 노출되어 있다.



하단의 조명기구가 광고면을 여유있게 밝히고 있으며 시각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인다.



1점지지 지주이지만 철골트러스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파이프 구조로 간단히 정리되었다. 구조와 심미성을 해결한 형태이다.



조명이 광고면 상하부에 위치한 것으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운전자 시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광고면 하부에 조명부분을 따로 두어 광고면을 침해하지 않는다.



광고면 하단에 관리구역이 없어 시각적 완충지역이 필요해 보인다.



하단 관리구역이 있어 광고면이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또한 기능적인 부분(조명, 보수로)도 정리되어 보인다.

510

5대 원칙

- 1 간단하고 단순하게 표현한다.
- 2 문자보다는 이미지로 표현한다.
- 3 재미있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 4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한다.
- 5 기업이나 브랜드는 작게 표기한다.

520

체크리스트

521

표기요소

- 주요 표기요소와 보조 표기요소의 구성이 적절한가
-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 표기요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 하나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표현하였는가
- 이미지가 단순하며, 시선을 집중시키는가
- 광고의 메시지를 이미지로 전달하였는가
- 복합형의 표현이 지나치지 않으며 효과적인가
-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 배경이 복잡하여 산만해 보이지 않는가
- 이미지의 해상도는 적당한가

522

문자

- 광고 문안은 쉽고 단순하게 표현하였는가
- 표기사항을 최소로 줄였는가
- 문자는 잘 읽히는가

- 문자의 비중이 세로 길이와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가
- 브랜드나 기업의 표시는 최소화하였는가
- 광고면의 옆면(두께 부분)까지 표시하였는가
- 광고의 내용과 성격, 목적에 맞는 글꼴을 사용하였는가

523 색상

- 색상의 대비가 조화로운가
- 사용된 색상이 자극적이지 않은가
- 원색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가
- 주목성과 가시성이 높은 색을 사용하였는가
- 광고면의 배색이 문자의 가독성을 떨어뜨리지는 않는가
- 계절의 변화와 주변환경을 고려하였는가
- 출력 시스템에 맞는 색상관리를 하였는가

524 창의력

-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유머나 은유를 적절히 활용해 광고내용을 전달하고 있는가
- 광고물의 디자인이 새롭고 신선한가
- 광고물의 디자인이 어디선가 본 듯하지는 않은가
- 표현이 재미있어 보는 이를 즐겁게 하는가
- 광고물의 표현이 시선을 끄는가

525 영향력

- 빛을 반사해 운전자나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지는 않는가
- 운전자의 시선을 자극해 피곤하게 하지는 않는가
- 운전자의 시선을 너무 오랫동안 고정시킬 위험은 없는가
- 지나치게 먼 곳에서부터 시선을 집중시키지는 않는가
- 사용된 소재가 환경에 유해하지 않으며 재활용이 가능한가

526 돌출부분

- 이미지나 문자가 효과적으로 돌출되었는가
- 한 방향 또는 두 방향으로의 돌출이 규정 범위를 지켰는가
- 돌출 부위가 광고물을 복잡하게 보이게 하지는 않는가
- 돌출부의 지지구조는 안전한가
- 돌출부는 뒷면과 선대칭으로 배치되었는가
- 채널문자를 지지하는구조가 복잡해 보이지 않는가
- 채널문자가 뒷면의 돌출부와 겹쳐 보이지 않도록 처리되었는가
- 입체 부위가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가
- 입체물의 표현 재료는 안전하며, 친화경 소재를 사용하였는가

531 표기 사항

- 주요 표기요소: 문자, 그림, 사진 등의 시각 이미지와 기업명 또는 브랜드명
- 보조 표기요소는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영업내용 등이며, 최소한의 사항만 표시
-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은 문안을 중심으로 표현
- 광고 문안은 쉽고 짧을 수록 효과적임

542 입체 표현

- 입체적인 형태의 표기요소는 상징성과 조형성을 고려해 개성있게 표현
- 지나친 장식은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피함
- 돌출부위는 양면을 선대칭으로 배치하여 뒷면이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상단으로 돌출된 채널문자는 뒷면과 겹쳐 보이지 않게 처리

533 문자

- 충분한 여백을 확보하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자의 굵기, 문자 폭, 문자 간격 등을 조절
- 한글은 명조보다는 고딕 계열의 글꼴을, 영문은 산세리프 계열 글꼴의 사용을 권장
- 일정 거리에서도 잘 보여야 하므로 가는 글꼴의 사용은 지양
- 장식적인 글꼴은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산만해 보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 후 사용
-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사용한 테두리나 진한 그림자 처리는 지양
- 하나의 광고에는 한두 가지 이내의 글꼴로 광고내용을 전달
-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의 글꼴을 크거나 굵게 하거나 기울이는 등 변형을 주어 표현

534 색채

- 광고내용의 특성과 브랜드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색을 사용
- 광고면에 많은 색을 사용하면 주목성이 떨어지므로 두세 가지 이하의 색을 사용
- 많은 색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같은 계열의 색상군을 적절히 활용해 표현
- 주조색과 보조색을 구분해 적용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상을 사용
- 원색은 강조하려는 부분에만 포인트 색상으로 사용
- 두 가지 이상 원색의 조합은 중저채도의 색상과 적절히 조합해 사용

534.1 색의 성격



빨간색 흥분, 열정, 강렬함, 힘, 태양, 불, 피 등의 의미. 채도가 높은 빨강을 넓은 면적에 사용하기보다는 강조하고자 하는 특정 부분이나 작은 면적에 강조색으로 활용



주황색 빨강과 노랑의 이차색으로, 빨강의 강렬함과 노랑의 명량한 이미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 우리나라 사람의 피부색이나, 마른 풀, 나무색 등과 잘 어울림



노란색 따뜻하고 명량한 색으로, 생동감, 활동력, 행복 등의 이미지. 넓은 면에 사용하기에 유용하며 다양한 톤으로 변형해 사용하면 효과적임



초록색 노랑의 명량함과 파랑의 차분한 이미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 생명의 색으로 자연과 건강, 평화와 복지를 상징하며, 어둡게 사용하면 위엄과 신뢰감의 이미지를 줌



파란색 차갑고 맑은 하늘이나 깨끗한 물, 평화의 색으로 첨단기술이나 이지적인 느낌. 밝게 사용하면 생생한 이미지를, 어둡게 사용하면 무겁고 억압적인 이미지를 줌



갈색 빨강, 주황, 노랑이 주는 힘찬 느낌은 없으나 따뜻한 느낌. 고전적인 느낌과 안정감을 주는 색으로 전통, 자연 등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많이 사용됨



보라색 따뜻함과 차가움, 활력과 차분함의 이미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 화려함, 세련됨, 우아함, 섬세함, 환상적인 분위기의 색으로 여성관련 감성용품에 많이 사용됨



금색 최고를 의미하거나 부와 권위, 명예나 영광을 나타내는 고급스러운 느낌의 색. 금속의 속성을 지닌 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일정 부분에 사용



은색 차갑고 이지적인 느낌의 색으로 고급스러움을 나타낼 때 사용. 안료 방식의 표현을 권장. 빛의 반사가 가능한 재료를 광고면 전체나 넓은 면적에 사용하는 것은 지양.



회색 다른 색과 잘 어울리는 현대적인 느낌의 색. 따뜻한 회색조는 빨강, 어두운 녹색, 주황 같은 밝은 색상을 위한 완벽한 배경이 됨



검정색 강렬함, 심각함, 엄숙함, 격식 등을 의미하는 강한 색. 현대적이고 패셔너블한 느낌도 지니고 있는 세련된 색으로 포용력과 강렬함이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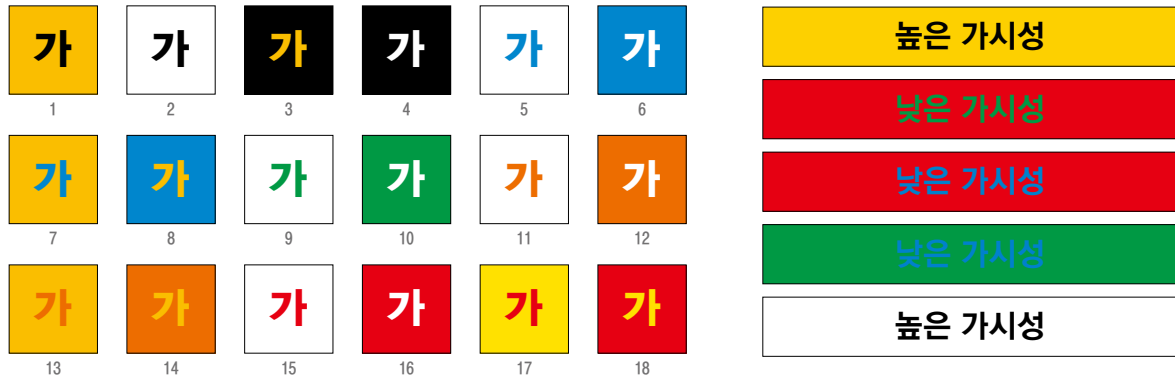


하얀색 채도가 없기 때문에 깨끗함, 단순함 등을 상징. 약간의 유채색을 혼합해서 차가운 흰색이나 따뜻한 흰색 등과 같이 다양한 색으로 변형해 활용

534.2 색과 가시성

바탕색 위에 문자를 배치해야 할 경우에는 가독성과 가시성을 고려

명도와 채도 차이가 클 때 가독성이 높으며, 채도가 높은 원색의 배색은 가독성이 떨어짐



출처: Media Planning Guide, Clearchannel

535 소재

- 강한 햇빛과 조명에 오래 노출되어도 바래거나 변하지 않는 잉크 소재를 사용
- 안료나 염료, 출력용 원단의 소재는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소재를 사용
- 복합형과 입체형 광고물에 사용하는 소재는 다양한 재료의 혼용을 권장
- 교통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해, 태양광이나 조명의 빛을 반사하는 금속 소재의 사용을 피함

536 이미지

- 문자보다 그림이나 사진, 그래픽 등의 시각이미지를 사용한 내용 전달을 권장
- 브랜드 로고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음
- 하나의 명확한 아이디어를 한두 개의 이미지를 사용해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임
-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유머러스하거나 은유적인 표현이 내용 전달에 효과적임
- 5초 이내에 광고내용이 전달되어야 하므로 간결한 이미지의 표현을 권장
- 단순한 배경이 주제를 돋보이게 하므로 그래픽이 복잡하거나 강한 대비의 배색은 지양
- 평면 이미지보다는 사각틀을 벗어난 이미지나 입체적인 표현을 권장



색의 이미지를 평면형으로 표현한 예



색의 대비를 이용하여 주목성을 높인 예



기발한 발상과 조형물로 주목성을 높인 복합형



캐릭터를 활용한 복합형



제품 이미지를 입체형으로 표현한 예



자사의 엠블럼을 조형물로 표현한 입체형

610

5대 원칙

- 1 지나치게 밝은 조명보다는 적정 밝기의 조명이 좋다.
- 2 현란한 움직임보다는 정적인 아름다움이 좋다.
- 3 지나친 광색보다는 조화로운 광색이 좋다.
- 4 광원을 보여주기보다는 가려야 한다.
- 5 야간의 미관을 고려해야 한다.

620

체크리스트

621 광고물의 외관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 조명기구가 광고물 밖으로 돌출되지 않았는가
- 조명이 광고물을 가리지 않는가
- 조명기구가 너무 많아 광고물을 보기 싫게 하지는 않는가
- 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조명기구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조명기구는 없는가

622 광고내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 야간에도 광고의 색이 자연스러운가
- 광원이 지나치게 밝아 광고가 오히려 잘 안 보이지는 않는가
- 야간의 광고면에 빛의 얼룩이 지지는 않는가

623 주변환경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 보행이나 운전 시 눈이 부실 정도로 밝지는 않은가
- 과다한 밝기로 주변의 조도가 높지는 않은가

- 적재적소의 불빛을 포착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내 점멸제어는 가능한가
- 구역별 점멸제어는 가능한가

624 유지·보수

- 조명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선택한 조명기구의 수명은 충분한가
- 적절한 시기에 램프를 교체하는가
- 조명기구가 환경에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630 옥외광고물의 조명
640 조명의 현황 및 분석
650 조명방식의 검토
본 보고서 참조

660 조명의 가이드라인

661 설치위치에 따른 휘도 권고 기준

- 설치위치에 따른 주변환경과의 휘도비에 따라 광고물의 적정 휘도 범위가 필요함
- 설치위치에 따라 조명의 밝기, 움직임, 조명방식, 광색을 고려
- 용도 및 구역 휘도에 있어 아래와 같이 권장하나 환경을 고려해 낮추는 것을 권장

용도 및 구역	최대표면 휘도(cd/m²)	움직임	조명방식	광색
자연 및 농촌 경관	50	불가	직접조명방식 지양	원색 지양
도시 농촌 복합 경관	400	밝기 및 색상 변화시간 10초 이상으로 허용		
공항,철도,버스 및 항만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진출입로 제외)	800		•	•
도시 경관	1000	•	•	•

662 설치위치에 따른 조명방식 분류

- 광고의 효과 및 야간경관의 미관형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명방식을 권장

구분	옥외광고물 분류	광고면 표면	도시경관	도시권외 경관	자연경관
A-1	지주이용간판	입체형/평면형/복합형	외부투광방식		
A-2	지주이용간판_전광류	•	직접발광방식		×
B-1	홍보탑	입체형/평면형/복합형	외부투광방식		
B-2	홍보탑_전광류	•	직접발광방식		×
C-1	옥상간판	입체형/평면형/복합형	외부투광방식/내부조명방식		
C-2	옥상간판_전광류	•	직접발광방식		
D	입체형	입체형	외부투광방식/직접발광방식		

- A-1 지주이용간판, B-1 홍보탑의 외부투광방식은 하부조명 설치로 하는 것이 좋음.
단, 광고의 연출을 위해 상부조명 필요시 최소로 혼재해 설치하는 것을 고려
- B-1 홍보탑의 경우 공항, 철도역사, 버스 및 항만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진출입로 제외), B-2 홍보탑 전광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설치가 가능
- C-1 옥상간판은 복합형 및 입체형을 고려해 외부투광방식과 내부조명방식을 혼재해 설치할 필요가 있음. 단 문자나 형상에 한해서는 내부조명방식을 고려
- D 입체형은 외부투광방식을 권장하며, 광고의 연출과 효과를 위해서는 직접발광방식과 혼재해 설치할 필요가 있음
- A-2 지주이용간판 전광류에 사용은 현재 제한사항이나, 광고물의 유지관리와 효과를 위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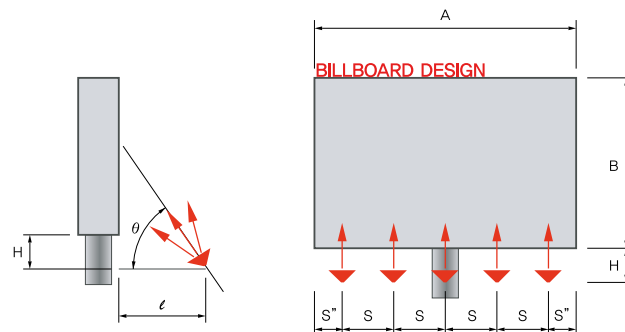
663 형태별 조명방식 및 지침

663.1 지주이용간판

- 권장기준
- 662 설치위치에 따른 조명방식 분류[A-1]

구분	지주이용간판A-1
광고물 크기	가로 18m X 세로 8m 높이 25m 이내
총 광고면적	288㎡
조명방식	외부투광방식
조명기구 이격거리(S)	최대 1.5~2m 이내
조명기구의 암길이(ℓ)	2m 이내
조사방향(θ)	광고면의 높이(B)를 고려한 조사방향(θ) 설정
기타사항	유지 보수를 위한 안전난간대 설치

- 지주이용간판의 외부투광방식으로 하부조명 설치를 권장
- 광고의 연출을 위해 상부조명이 필요하면 설치가 가능
- 상부조명을 설치할 때 밝기, 조사방향, 수량, 주변환경 조도는 최소화 함
- 광고면 상부에 문자 형식의 채널사인을 설치할 때 광원이 외부로 돌출되어서는 안 되며, 방수, 방진을 고려해 광원을 설치



663.2 홍보탑

– 권장기준

- 662 설치위치에 따른 조명방식 분류[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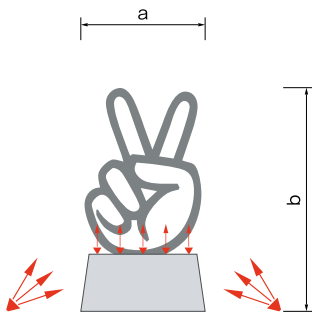
구분	홍보탑 B-1
광고물 크기	가로 10m X 세로 5m 높이 10m 이내
총 광고면적	100㎡ (50㎡ x 2면)
조명방식	공항, 철도역사, 버스 및 항만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진출입로 제외)
설치 장소	외부투광방식
조명기구 이격거리(S)	최대 1.5~2m 이내
조명기구의 암길이(L)	1m 이내
조사방향(θ)	광고면의 높이(B)를 고려한 조사방향(θ) 설정
기타사항	밝기 제어가 가능해야 함

- 홍보탑의 조명방식은 663.1 지주이용간판 A-1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세로형 홍보탑의 경우 내부조명방식이 이상적이나, 법령상 불가하므로 외부투광방식으로 상부조명을 권장
- 복합형의 조명방식은 광고면이 외부로 돌출 시 광고물 외부에 설치할 수 있음. 단, 수량은 되도록 적게 하며 식수로 차폐하는 것을 권장

663.3 입체형

– 권장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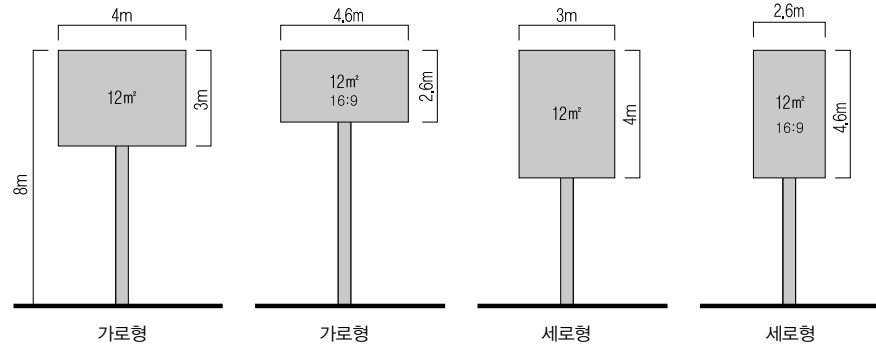
- 662 설치위치에 따른 조명방식 분류[D]



구분	입체형 D
광고물 크기	지주이용간판 높이 25m 이내/ 홍보탑 10m 이내
총 광고면적	외부투광방식
조명 설치 면적(a" x b")	•
최대 표면 휘도(cd/㎡)	환경지역 밝기에 따름
움직임	•
광색	원색지양
기타사항	밝기 제어가 가능해야 함

- 밝기는 <661 설치위치에 따른 휘도 권고 기준>를 따르는 것을 권장
- 직접발광방식에 있어 빛의 움직임을 최소화 함
- 외부투광방식에 있어 광원이 직접 눈에 보이지 않게 매입 또는 후드를 설치 해야 함

- 입체형(지주이용)을 지면보다 높이 설치하는 경우, 외부투광방식에 있어 조명기구를 식수로 차폐하는 것을 권장
- 입체형의 전광류 사용은 현재 제한사항이나, 광고물의 효과와 표현을 위해서는 전광류 면적제한을 전제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663.4 전광류

- 권장기준
- 662 설치위치에 따른 조명방식 분류[B-2/ C-2/ A-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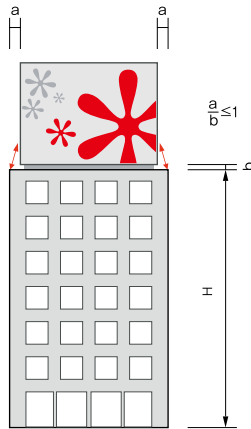
구분	홍보탑 전광류 B-2	옥상간판 전광류 C-2		지주이용간판 전광류 A-2	
광고면 크기	12㎡ 이내	가로 30m x 세로 15m 이내		가로 18m x 세로 8m 이내	
용도 및 설치장소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내	건축물 측면 설치		도시권 내	도시권 외
		문화재 인근 설치 불가			
		도시권 내	도시권 외		
최대표면권장 휘도(cd/㎡)	800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400 이하	200 이하
움직임	.	밝기 및 색상 변화 시간이 분당 6회 이내 일때 허용			
광색	원색지양				
조명방식	직접조명방식(LED)				
기타사항	휘도 제어가 가능해야 함				

- 옥외광고물 전광류에 있어 기존의 광고물 크기보다 작게 하는 것을 권장
- 옥외광고물 전광류 설치 시 최소화(휘도, 주변 조도)하는 것을 권장
- 심야시간대는 권장 휘도의 1/2로 낮춰 운영하거나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을 권장
- 지주이용간판의 전광류 사용은 제한사항이나, 광고물의 유지·관리와 효과를 위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음

663.5 옥상간판

— 권장기준

- 662 설치위치에 따른 조명방식 분류[C-1]



구분	옥상간판 C-1
광고물 크기	가로(a) 30m X 세로(b) 15m 이내 [건물 높이(H) 1/2 이내]
총 광고면적	1,050㎡
조명방식	5층 이상 15층 이내 건물 옥상
설치 장소	외부투광방식 / 내부조명방식
조명기구 이격거리(S)	최대 1.5~2m 이내
조명기구의 암길이(L)	0.6m~2m 확보
조사방향(θ)	광고면의 높이(B)를 고려한 조사방향(θ) 설정
기타사항	밝기 제어가 가능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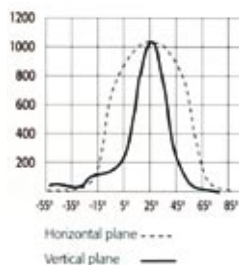
- 옥상간판 한 면에 한 가지 조명방식으로만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복합형 및 입체형을 고려해 내부조명방식에 한해 혼합방식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문자 및 형상을 나타내는 내부조명에 있어 전면을 비추는 방식은 피함
- 문자 및 형상을 나타내는 광고면 외에는 비투과형 재료를 선택
- 심야시간대에는 권장 휘도의 1/2로 낮춰 운영하거나 자동으로 제어하는 것을 권장

670

기타 조명 관련 권장사항

671 조명기구 권장사항

- 램프선정
 - 램프 수명과 효율 등을 고려해 조명기구를 선정
- 연색성(CRI, Ra), 색온도
 - 광고의 문자나 형상의 색상효과를 높이기 위해 광원의 선택이 중요
 - 일반적으로 평균연색지수 80 이상의 광원을 권장
- 조명기구
 - 외부투광방식에 있어 균질도를 위해 비대칭형 조명기구를 권장
 - 내 · 외부조명기구는 방수, 방진지수(IP등급 65이상)를 권장
- 조명방식
 - 내 · 외부조명방식으로 첨단 조명기구 및 조명방식을 적극 권장. 다만 주변환경을 고려해 적합한 조명방식을 선택



710

5대 원칙

- 1 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해 관리주체를 표시한다.
- 2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표기한다.
- 3 광고물 설치 후 지속적인 청소 및 관리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
- 4 구조물 및 지반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 5 조명 휘도를 균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720

체크리스트

721 관리주체 및 관리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 광고물 하단 관리공간에 관리주체를 표기하였는가
- 광고물 하단 관리공간에 관리번호를 표기하였는가
- 관리주체 및 관리번호의 표기방법은 규정대로 이루어졌는가
 - － 하단 관리공간 높이의 1/2 이내로 관리회사 패널을 부착한다.
 - － 패널 높이의 1/2 이내로 관리회사명을 표기한다.

722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 광고물의 지속적인 관리계획을 세워두었는가
- 광고물의 설계 · 시공은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되어 있는가
- 정기적으로 광고물과 조명기구를 청소하고 있는가
- 정기적으로 새동지와 새의 오물을 청소하고 있는가
- 구조물의 도색이 벗겨지거나 녹슨 곳은 없는가

- 광고물이 훼손되었을 경우 조속히 교체 또는 보수하고 있는가
- 조명은 일정 휘도와 균제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 수명이 다한 조명기구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 조명기구는 수명이 다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있는가

723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 정기적으로 광고물의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가
- 장마나 태풍이 오기 전에 광고물의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가
- 주변환경이 광고물에 의해 영향을 받고있지 않은가
- 악천후 등으로 지반붕괴의 위험은 없는가
- 악천후 직후에 광고물의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가
- 지지부에 변형이 생기지 않았는가
- 지지부의 고정부분에 풀림이나 부식이 생기지 않았는가
- 용접부에 균열 또는 부식이 생기지 않았는가

730 광고 제한 품목 및 광고주의 지정

- 지나친 음주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됨
- 의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됨
-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됨
-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를 다루어서는 안 됨
- 종교단체의 행사를 고지하는 내용이나 종교 관련 제품의 판매에 관한 내용 이외의 종교·신앙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서는 안 됨

출처 규칙 제 20호-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및 청소년보호법

740 광고 표시 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 광고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위법행위를 조장해서는 안 됨
-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됨
-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됨
-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됨
-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됨
- 신체적 결함,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됨
- 지나치게 비속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됨
-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됨
-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됨

출처 규칙 제 20호-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및 청소년보호법

810 평면형 지주이용간판





















